

한국장학재단 2026년 하반기 종합직 채용 입사지원 가이드

※ 분야별로 요구되는 내용 및 자격증이 상이하므로,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가이드는 참고용으로,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 입사지원서 작성

■ 입사지원서 접수 일정 및 방법

- 입사지원서 접수는 '26. 9. 1.(화)부터'26. 9. 15.(화) 17:00(한국시각 기준)까지 가능하며, 한국장학재단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kosaf.scout.co.kr>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만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**마감시각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서 작성·수정·제출 등이 불가능**하며, 임시저장된 지원서 및 작성 중인 지원서 역시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**반드시 마감시각 이전에 지원서 제출을 완료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접수마감일 당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**가급적 마감일 하루 전에 제출을 완료**하기를 권고드리며,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급증,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접수 불가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■ 입사지원서 제출 완료 이후 수정

- **입사지원서 제출 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**하므로 제출을 완료하기 이전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지원서 제출 완료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채용 홈페이지 Q&A 또는 02-2188-6899를 통해 개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원서 접수 마감시각에 임박한 경우 지원서 수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서류전형 이후 입사지원서 열람

-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 마감 이후 **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입사지원 홈페이지 상단 [지원서 보기] 항목에서 확인** 가능합니다.

■ 블라인드 작성 관련 안내

- **성명, 연령(생년월일), 출생지, 근무(활동) 지역명, 가족관계/친인척, 학력, 성별, 신체조건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**블라인드 사항을 위배한 경우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며, 세부 기준 및 위반 사례는 채용공고문 「붙임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 예시」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- 직무 관련 경력·경험사항에는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기관명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기관명에 지역명, 학교가 포함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자기소개서(경력기술서) 블라인드 예시

- ▶ 학교명: OO대학교, OO고등학교
 - ※ 동아리명 등으로 출신학교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
- ▶ 기업명: OO공기업, OO공공기관, 금융형 공공기관, IT기업 등
 - ※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기관명 기재는 가능하나, 본인을 유추할 수 있는 세부 내용 기재 금지

■ 학교 교육(학교 외 교육) 입력 방법

- 교육사항에는 성적증명서, 이수증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교육사항만 기재해야 하며, 학점은행제로 수강한 내역은 학교 교육 기입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.
- 이수학점은 대학교의 경우 성적이 아닌 3학점, 2학점과 같은 학점을 기재하고, 고등학교의 경우 단위 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교육사항은 서류전형 정량평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며, 직무 관련 정보 확인 및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※ 교육사항에는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내용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판단 기준

- 서류전형은 정량평가(어학성적+자격증+가점)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입사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블라인드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는 정량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기준

- ▶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문항 미기재 또는 특정 문자 반복 기재
- ▶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문항별 20% 미만 기재
 - ※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글자 수 계산
- ▶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문항 중 2개 이상을 동일 내용으로 작성
 - ※ 전체가 아닌 상당 부분이 동일한 경우도 불성실 작성으로 간주
- ▶ 지원회사명의 오기재(타기업 지원 목적의 입사지원서 등)
 - ※ 타기업명, 채용분야 등 오기재 시 불성실 작성으로 간주
- ▶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문항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작성

■ 외국어(영어) 성적 입력 (서류전형 정량평가 60점)

- 종합직(5급) 신입직 지원자격은 토익 환산점수 기준 750점 이상이며, 하반기 채용부터는 어학성적이 서류전형 정량평가 60점 항목으로 반영됩니다. 기준점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취득점수(등급)에 따라 환산점수가 차등 부여되므로, 채용 공고문 「붙임. 서류평가 기준표」의 환산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인정 어학시험은 TOEIC, NEW TEPS, TOEFL(iBT), TOEIC Speaking, OPIc(영어) 5종이며, 기재된 시험 외의 성적 및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지 않은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복수의 어학성적을 보유한 경우 환산점수가 가장 높은 성적 1개만 인정하며, 지원서에는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성적 1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.
-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(gongmuwon.gosi.kr, 구 통합채용포털)에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(5년)에 따라 성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- 청각장애인(중증장애인)은 별도의 어학성적 환산기준(「붙임. 서류평가 기준표」)이 적용되므로, 입사지원 시 ‘장애’란에 ‘장애’를 선택하고 장애종류(청각장애) 중증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성적 정보(점수(등급), 취득일자, 등록번호 등)를 오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니, 특정 알파벳과 숫자(I, L, O, 0 등) 등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개명한 지원자의 경우, 시험 주관기관에 개명 후 이름으로 자격증을 갱신 신청하여 성적 조회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자격사항 입력 방법 (서류전형 정량평가 40점)

첨부1

-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합격하여 유효한 자격만 인정하며, 부분합격, 기한 만료 등 유효하지 않은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 - '26년 하반기 채용부터 자격증은 우대(가점) 항목이 아닌 서류전형 정량평가 40점 항목으로 반영되며,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증 및 배점은 「붙임 서류평가 기준표」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- 각 능력단위 별로 자격증을 중복 보유한 경우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, 지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.
 - 등급, 급수, 자격증번호, 취득일자 등 관련 사항을 오기재하여 자격사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- 기재한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(자격증, 면허증, 합격증 사본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증빙이 불가하거나 기재한 정보와 다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자격사항에 대한 자세한 입력 방법은 [첨부1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자격사항 목록에서 보유한 자격증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, 채용 홈페이지 Q&A 또는 02-2188-6899를 통해 개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경력사항 입력

- 시설관리(경력)의 경우 건축기사 자격 취득 이후 정부·공공기관·기업체 등에서 건축·시설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이 제출되어야 합니다.

■ 채용목표제 선발 기준 (일반행정(일반) 채용분야)

첨부2

- 본 채용에서는 채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채용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전지역인재, 비수도권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
(하반기 적용 분야: 일반행정 8명)

- 채용목표제란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합격자가 일정 목표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로써, 아래의 기준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전형단계별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게 됩니다.

대상	이전지역인재	비수도권지역인재
목표비율	30%	35%
적용 채용분야	일반행정(일반)	
적용 전형단계	필기전형 ~ 최종합격자 선정	

※ 채용목표제 적용 순서는 이전지역 인재 → 비수도권지역인재 순

※ 이전지역인재와 비수도권지역인재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둘 다 비율에 포함하여 계산

※ 예1) 합격자 10명 중 이전지역인재, 비수도권지역인재 0명 → 이전지역인재 3명, 비수도권지역인재 1명 추가 선발 (총 14명 합격)

예2) 합격자 10명 중 이전지역인재 0명, 비수도권지역인재 4명 → 이전지역인재 3명 추가 선발 (총 13명 합격)

예3) 합격자 10명 중 이전지역인재 3명, 비수도권지역인재 0명 → 비수도권지역인재 1명 추가 선발 (총 11명 합격)

예4) 합격자 10명 중 이전지역인재 3명, 비수도권지역인재 1명 → 추가 선발 없음

- **입사지원서 작성 시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인재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,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또한, 향후 제출서류 상 증빙이 불가하거나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**

- 세부적인 채용목표제 적용 방법은 [첨부2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이전지역인재, 비수도권지역인재 판단 기준

첨부3

- 이전지역인재 : 지원서 접수 시 최종학력이 대구·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재학생·휴학생 등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이전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 이상 등록하고,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를 의미합니다.
- ※ 예1) 대구·경북소재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/졸업예정 → 이전지역인재 O
- 예2)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, 대구·경북소재 대학교 졸업/졸업예정 → 이전지역인재 O
- 예3)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, 대구·경북소재 대학교 재학(졸업예정X) → 이전지역인재 X
- 예4) 대구·경북소재 고등학교 졸업, 타지역 대학교 재학(졸업예정X) → 이전지역인재 O
- 예5) 대구·경북소재 고등학교 졸업, 타지역 대학교 졸업/졸업예정 → 이전지역인재 X

- 비수도권지역인재 : 지원서 접수 시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지역(서울, 경기, 인천, 해외 제외)에 소재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재학·휴학·중퇴의 경우도 해당합니다.

- ※ 예1) 비수도권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(최종학력) 졸업/재학/휴학 → 비수도권지역인재 ○
- 예2)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,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/재학/휴학 → 비수도권지역인재 ○
- 예3)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, 수도권 대학교 졸업/재학/휴학 → 비수도권지역인재 X
- 예4)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,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/재학/휴학 → 비수도권지역인재 ○
- 예5)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, 수도권 대학교 졸업/재학/휴학 → 비수도권지역인재 X

◆ 이전지역인재, 비수도권지역인재 주요 예시

- ▶ 대구·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,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(졸업예정X)
☞ 이전지역인재 ○, 비수도권지역인재 X
 - ▶ 대구·경북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, 수도권 소재 대학교 졸업(졸업예정○)
☞ 이전지역인재 X, 비수도권지역인재 X
 - ▶ 대구·경북 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, 대구·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(졸업예정X)
☞ 이전지역인재 X, 비수도권지역인재 ○
 - ▶ 대구·경북 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, 대구·경북 소재 대학교 졸업(졸업예정○)
☞ 이전지역인재 ○, 비수도권지역인재 ○
- ※ 위 예시처럼 ‘이전지역인재’와 ‘비수도권지역인재’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지원서에도 ‘이전지역인재’와 ‘비수도권지역인재’를 동시에 “해당”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위 예시는 단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 실제 학교별 이전지역, 비수도권 해당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(세부 기준 [첨부3] 참고)

-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,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발급 가능 여부를 학교 행정실 등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발급 불가 시 재학 해당)
- 대학교 학적 상태(졸업, 졸업예정, 재학, 중퇴 등)에 따라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인재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의 학적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세부적인 이전지역인재, 비수도권지역인재 판단 기준은 [첨부3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장애인 지원자 편의 제공 안내

첨부4

-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개인별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,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의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은 [첨부4]를 참고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험 당일 신청 시 편의 제공 불가(사전 신청 원칙)

- 의사진단서/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
2 서류전형

■ 서류전형 평가방식 (정량평가)

- 본 채용의 서류전형(일반행정·IT개발운영)은 정량평가(어학성적 60점+자격증 40점+가점) 제도를 도입하여 고득점 순으로 80배수 내외의 합격자를 선발합니다.
- 지원자격 미충족, 지원서 불성실 작성, 블라인드 위배,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(불일치)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(경력직 - 시설관리) 업무수행기술서(1개) 및 자기소개서(4개) 각 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6배수 내외를 선발하며, 인성검사에 응시 통과 하여야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.

■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등록

- 일반행정 및 IT 개발운영의 서류전형 합격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, 증명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. 등록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함께 안내드릴 예정이며, 해당 정보는 필기전형 응시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로 활용됩니다.
- **기한 내 생년월일, 증명사진을 미등록한 지원자는 필기전형 수험표 출력 및 응시가 불가**하니 필기전형을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입력 기간(예정) : '26. 10. 2.(금)~'26. 10. 6.(화) 12:00
(시설관리(경력)는 별도 기간 안내)

■ 고사장 변경

- 필기전형 고사장은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희망응시지역으로 선택한 지역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. **입사지원서 제출완료 이후 응시지역 및 고사장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**

※ 필기전형 운영현황에 따라 희망응시지역과 실제 응시지역은 상이할 수 있음
(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순으로 응시지역 배정 예정)

※ 시설관리(경력)은 별도 필기전형 미 실시

■ 필기전형 응시확인서 발급

-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응시한 지원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발급은 채용 홈페이지의 Q&A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, 발급까지 1~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※ 응시확인서는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에 참여한 대상에게 발급

■ 필기전형 신분증 지참

- **필기전형 당일 지원자는 공인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필기전형 응시가 가능합니다.** 기타 신분증(학생증, 자격증 등) 및 모바일 신분증은 응시가 불가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인정 공인신분증

- ▶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*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, 국가보훈등록증, 청소년증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
* 신여권의 경우,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여권 정보 증명서 필수 지참

■ 필기전형 수험표

- 수험표는 본인 확인 사항(생년월일, 증명사진)을 등록한 이후 출력이 가능하며, **필기전형 당일 출력한 수험표를 필수 지참하여 필기전형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**

■ 면접 일정 변경

- 실무면접은 '26. 11. 9.(월)부터 11. 10.(화)까지 진행될 예정이며, 심층면접은 실무면접 합격자 대상으로 '26. 11. 25.(수)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실무면접 일자 및 시각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되며, 심층면접 일자 및 시각은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시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. **면접일정 변경은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■ 면접전형 신분증 지참

- 면접전형은 필기전형과 동일하게 공인신분증 원본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. **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모바일 신분증 불인정)**

■ 증빙서류 제출

- **실무면접 합격자는 심층면접 전까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최종합격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 원본을 임용일 지참하여 추가 제출해야 하니, 서류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온라인 제출기간(예정) :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일 ~ 11. 24.(화) 17:00

- 증빙서류는 필수서류와 해당서류로 구분되어 있으며, 지원자는 채용분야별 필수 서류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당사는 지원자별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, 채용 공고문 및 합격자 발표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지원자가 직접 판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**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하거나, 미제출 또는 누락되어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※ 제출서류에 대한 추가 진위 확인 및 보완 등의 사유로 개별 연락할 수 있습니다.

■ 경력 인정 여부

- 신입사원(5급) 채용 시 군경력(3년 이내), 대학원 경력(2년 이내) 외의 입사전 근무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지원 시 참고바랍니다.

■ 수습기간 적용 여부

-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이후 특별내신을 통해 직무수행능력,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수습기간 동안 보수, 복지 등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근무지역

- 신입직원은 대구(본사 및 별관)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, 재단 인력 운영 현황에 따라 근무지는 타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타 지역 : 서울사무소(서울), 중앙취업지원센터(세종), 지역센터(전국) 등

#첨부 1. 자격사항 입력 방법(참고용)

#첨부 2. 채용목표제 적용 방법

#첨부 3. 이전지역인재, 비수도권지역인재 판단 기준

#첨부 4.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내용 및 증빙서류

첨부1

자격사항 입력 방법

한국사능력검정시험

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

성 명 :

생년월일 :

합격등급 ① 급

인증번호 ② 12-345678

위 사람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
제 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위 급수에 합격하였기에
이 증서를 드립니다.

③ 2024 년 08 월 22 일



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



구분	입력방식
① 자격증/면허명	자격증(한국사능력검정) / 급수 선택
② 발급번호	"-" 포함 입력(00-000000)
③ 취득일	취득일자 입력



문화체육관광부 공인 제2022-2호

한국어능력 자격증

국어능력 민간자격 국가공인 검정

자 격 번 호 : ② 1234-56-789012
성 명 :
생 년 월 일 :
자 격 종 목 : 국어능력
자 격 등 급① 3-급
자 격 취 득 일③ 2024년 06월 27일
자 격 만 료 일 :

위 사람은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제 회 KBS
한국어능력시험에서 자격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문화
체육관광부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4 년 06 월 27일

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

한국방송 사장



구분	입력방식
① 자격증/면허명	자격증(KBS한국어능력시험) / 등급 선택
② 발급번호	"-" 포함 입력(0000-00-000000)
③ 취득일	취득일자 입력



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공인 자격시험
한국실용글쓰기검정

국가공인 자격증

종목 및 등급: ① 3급

자 격 번 호: ② 12AA34567

취 득 점 수:

성 명:

생 년 월 일: ③

유효 기 간: 2022년 12월 20일 ~ 2024년 12월 19일



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정관 제 4조 제 1항에
의거하여 시행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에서 자격기본법 제23조
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.



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공인 자격시험 관리 운영기관
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이사장



본 자격증의 진위 확인은 한국실용글쓰기검정 홈페이지(www.klata.or.kr)에서 가능하며,
위·변조 시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.

구분	입력방식
① 자격증/면허명	자격증(한국실용글쓰기검정) / 등급 선택
② 발급번호	0000000000
③ 취득일	취득일자 입력

자 격 취 득 확 인 서

성명		생년월일	
종목	① 컴퓨터활용능력 1급		
자격번호	② 12-K4-567890		

③ 2023년 02월 24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대한상공회의소 회장



구분	입력방식
① 자격증/면허명	자격증(컴퓨터활용능력) / 등급 선택
② 발급번호	00-00-000000
③ 취득일	취득일자 입력

관리번호: 202410300811-00-001853



국가기술자격증

자격번호: ② 123456789

자격종목 ① 무선설비기능사

성명:

생년월일:



위 사람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합격 연월일 ③ 2010년 07월 20일

발급 연월일: 2024년 03월 29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※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 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이 확인·발급함.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



구분	입력방식
① 자격증/면허명	자격증 검색
② 발급번호	0000000000
③ 취득일	취득일자 입력

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

문서확인번호 :

관리번호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		

자격취득 사항	① 자격종목	합격일자	취득 당시 종목명
	② 12345678L	응용지질기사	③ 2022.06.17
			응용지질기사

행정처분 사항	자격종목	처분 종류	처분일	처분내용

인적정보 변경내역	변경항목	변경전	변경후	변경일자

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합니다.

2022년 09월 27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

구분	입력방식
① 자격증/면허명	자격증 검색
② 발급번호	0000000000("-" 있을 경우 포함 입력)
③ 취득일	취득일자 입력



국가공인 자격증

종목 및 등급 :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①

자 격 번 호 : ② ADsP-123456789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합 격 일 자 : 2025년 06월 13일 ③

유효기간 : 영구

위 사람은 본원에서 시행한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
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.

2026년 3월 25일
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



구분	입력방식
① 자격증/면허명	자격증 검색
② 발급번호	0000-0000000000(앞자리 알파벳까지 입력)
③ 취득일	합격일자 입력

첨부2

채용목표제 적용 방법

채용목표 유형	적용 방법
이전지역인재	○ 적용대상: 대구·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자 (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(예정)한 자는 제외) ○ 적용방법: 필기전형부터 각 전형단계* 및 채용분야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예정인원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순(가점 포함)으로 30%에 도달할 때까지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* 전형단계별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(①, ②) ① 전형별(필기전형, 실무면접, 심층면접(최종합격)) 합격자 선정 시 ‘채용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-5점 이상’ 득점(가점 포함) ②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가점을 제외한 원점수 기준) 충족 - 만점의 40% 이상 ※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
비수도권 지역인재	○ 적용대상: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외에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을 졸업(예정)·종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○ 적용방법: 필기전형부터 각 전형단계* 및 채용분야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예정인원의 35%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순(가점 포함)으로 35%에 도달할 때까지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* 전형단계별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(①, ②) ① 전형별(필기전형, 실무면접, 심층면접(최종합격)) 합격자 선정 시 ‘채용분야별 합격자 최저점수 -5점 이상’ 득점(가점 포함) ② 전형별 합격 최소요건(가점을 제외한 원점수 기준) 충족 - 만점의 40% 이상 ※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

이전지역 인재

□ 이전지역 인재(대구·경북)의 정의

- 대구·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자

□ 이전지역(대구·경북) 학교의 범위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캠퍼스)
 - 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- 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-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□ 이전지역(대구·경북) 학교 제외 대상

- ①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
 -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 -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- ②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

□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 -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 -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 -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
-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②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-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예 시

<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>

○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: 해당

○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: 해당

<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>

○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
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
○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
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
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
<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>

○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해당

○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
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○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
○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
<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○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
○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
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○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해당

○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○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해당

○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비해당

비수도권 지역인재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예 시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

-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④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①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③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④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③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첨부4

장애유형별 편의 제공사항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별 편의 제공내용 및 증빙서류				필기전형		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 제공내용	증빙서류	비고	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 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	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	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	
뇌병변 장애인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 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	
시각 장애인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 기기 지참 허용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	기존 1~2급	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기존 3급 2호	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기존 3급 1,2호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 성을 인정받은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	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	
		· 좋은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-	기존 4,5급 1호	
		· 나쁜눈의 시력이 0.02이하 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시력 0.3이하	
	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5급 2호, 6급
		청각 장애인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 /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 /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

장애유형별 편의 제공내용 및 증빙서류				면접전형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 제공내용	비고
지체 장애인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전담도우미 지원	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시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, 속기사 등) 지원 · 관련 자료 등 서면 제공	기존 2~6급